일성 트루엘 시그니처 삼척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18.(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삼척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8.)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삼척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 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ruel-samcheok.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0월 23일(수)	10월 24일(목)	10월 25일(금)	11월 01일(금)	11월 12일(화) ~11월 14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삼척시 건축과 - 32245호(2019.10.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외 5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8개동 총 885세대 중 일반공급 301세대
[특별공급 12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5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 양	계		
민영 주택	2019000874	01	59.7471A	59A	59.7471	23.1449	82.8920	26.9666	109.8586	45.7071	21	2	2	4	1	9	12	2
		02	59.5743B	59B	59.5743	22.5438	82.1181	26.8886	109.0067	45.5749	99	10	10	20	3	43	56	9
		03	74.9700A	74A	74.9700	28.2224	103.1924	33.8374	137.0298	57.3527	30	3	3	6	1	13	17	4
		04	74.9700B	74B	74.9700	28.2224	103.1924	33.8374	137.0298	57.3527	14	1	1	3	-	5	9	2
		05	84.6073	84	84.6073	30.2133	114.8206	38.1872	153.0078	64.7254	127	13	13	25	4	55	72	8
		06	123.7617	123	123.7617	45.5832	169.3449	55.8593	225.2043	94.6788	4	-	-	-	-	-	4	-
		07	143.6876A	143A	143.6876	54.7938	198.4814	64.8528	263.3342	109.9223	5	-	-	-	-	-	5	-
		08	143.9181B	143B	143.9181	52.4539	196.3720	64.9568	261.3288	110.0987	1	-	-	-	-	-	1	-
	합 계										301	29	29	58	9	125	176	25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동호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02.20	2020.06.19	2020.10.20	2021.02.19	2021.06.18	2021.10.20	입주지정기간
59A	104 ~ 105	1	1	17,428,485	159,691,515	177,120,000	5,000,000	12,712,000	17,712,000	17,712,000	17,712,000	17,712,000	17,712,000	17,712,000	53,136,000
		2	2	17,428,485	164,646,515	182,075,000	5,000,000	13,207,500	18,207,500	18,207,500	18,207,500	18,207,500	18,207,500	18,207,500	54,622,500
		3	3	17,428,485	169,600,515	187,029,000	5,000,000	13,702,900	18,702,900	18,702,900	18,702,900	18,702,900	18,702,900	18,702,900	56,108,700
		4~12	6	17,428,485	179,112,515	196,541,000	5,000,000	14,654,100	19,654,100	19,654,100	19,654,100	19,654,100	19,654,100	19,654,100	58,962,300
		13~20	3	17,428,485	182,084,515	199,513,000	5,000,000	14,951,300	19,951,300	19,951,300	19,951,300	19,951,300	19,951,300	19,951,300	59,853,900
		21~28	6	17,428,485	185,057,515	202,486,000	5,000,000	15,248,600	20,248,600	20,248,600	20,248,600	20,248,600	20,248,600	20,248,600	60,745,800
59B	101 ~ 104	1	4	17,378,076	161,347,924	178,726,000	5,000,000	12,872,600	17,872,600	17,872,600	17,872,600	17,872,600	17,872,600	17,872,600	53,617,800
		2	4	17,378,076	166,347,924	183,726,000	5,000,000	13,372,600	18,372,600	18,372,600	18,372,600	18,372,600	18,372,600	18,372,600	55,117,800
		3	4	17,378,076	171,347,924	188,726,000	5,000,000	13,872,600	18,872,600	18,872,600	18,872,600	18,872,600	18,872,600	18,872,600	56,617,800
		4~12	14	17,378,076	179,747,924	197,126,000	5,000,000	14,712,600	19,712,600	19,712,600	19,712,600	19,712,600	19,712,600	19,712,600	59,137,800
		13~20	17	17,378,076	182,447,924	199,826,000	5,000,000	14,982,600	19,982,600	19,982,600	19,982,600	19,982,600	19,982,600	19,982,600	59,947,800
		21~28	30	17,378,076	185,147,924	202,526,000	5,000,000	15,252,600	20,252,600	20,252,600	20,252,600	20,252,600	20,252,600	20,252,600	60,757,800
	106 ~ 108	1	3	17,378,076	154,347,924	171,726,000	5,000,000	12,172,600	17,172,600	17,172,600	17,172,600	17,172,600	17,172,600	17,172,600	51,517,800
		2	3	17,378,076	160,347,924	177,726,000	5,000,000	12,772,600	17,772,600	17,772,600	17,772,600	17,772,600	17,772,600	17,772,600	53,317,800
		3	2	17,378,076	165,347,924	182,726,000	5,000,000	13,272,600	18,272,600	18,272,600	18,272,600	18,272,600	18,272,600	18,272,600	54,817,800
		4~12	4	17,378,076	176,547,924	193,926,000	5,000,000	14,392,600	19,392,600	19,392,600	19,392,600	19,392,600	19,392,600	19,392,600	58,177,800
		13~20	3	17,378,076	179,147,924	196,526,000	5,000,000	14,652,600	19,652,600	19,652,600	19,652,600	19,652,600	19,652,600	19,652,600	58,957,800
		21~28	11	17,378,076	181,847,924	199,226,000	5,000,000	14,922,600	19,922,600	19,922,600	19,922,600	19,922,600	19,922,600	19,922,600	59,767,800
74A	102 ~ 103	1	1	21,869,046	201,812,954	223,682,000	5,000,000	17,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67,104,600
		2	1	21,869,046	206,812,954	228,682,000	5,000,000	17,868,200	22,868,200	22,868,200	22,868,200	22,868,200	22,868,200	22,868,200	68,604,600
		3	1	21,869,046	212,812,954	234,682,000	5,000,000	18,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70,404,600
		4~12	2	21,869,046	223,312,954	245,182,000	5,000,000	19,518,200	24,518,200	24,518,200	24,518,200	24,518,200	24,518,200	24,518,200	73,554,600
		13~20	2	21,869,046	226,612,954	248,482,000	5,000,000	19,848,200	24,848,200	24,848,200	24,848,200	24,848,200	24,848,200	24,848,200	74,544,600
		21~28	0	21,869,046	230,112,954	251,982,000	5,000,000	20,198,200	25,198,200	25,198,200	25,198,200	25,198,200	25,198,200	25,198,200	75,594,600
	106 ~ 108	1	3	21,869,046	199,812,954	221,682,000	5,000,000	17,168,200	22,168,200	22,168,200	22,168,200	22,168,200	22,168,200	22,168,200	66,504,600
		2	3	21,869,046	205,812,954	227,682,000	5,000,000	17,768,200	22,768,200	22,768,200	22,768,200	22,768,200	22,768,200	22,768,200	68,304,600
		3	2	21,869,046	210,812,954	232,682,000	5,000,000	18,268,200	23,268,200	23,268,200	23,268,200	23,268,200	23,268,200	23,268,200	69,804,600
		4~12	6	21,869,046	219,412,954	241,282,000	5,000,000	19,128,200	24,128,200	24,128,200	24,128,200	24,128,200	24,128,200	24,128,200	72,384,600
		13~20	4	21,869,046	222,712,954	244,582,000	5,000,000	19,458,200	24,458,200	24,458,200	24,458,200	24,458,200	24,458,200	24,458,200	73,374,600
		21~28	5	21,869,046	226,012,954	247,882,000	5,000,000	19,788,200	24,788,200	24,788,200	24,788,200	24,788,200	24,788,200	24,788,200	74,364,600
74B	104	1	2	21,869,046	201,812,954	223,682,000	5,000,000	17,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22,368,200	67,104,600
		2	1	21,869,046	207,812,954	229,682,000	5,000,000	17,968,200	22,968,200	22,968,200	22,968,200	22,968,200	22,968,200	22,968,200	68,904,600
		3	1	21,869,046	212,812,954	234,682,000	5,000,000	18,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23,468,200	70,404,600
		4~12	3	21,869,046	229,912,954	251,782,000	5,000,000	20,178,200	25,178,200	25,178,200	25,178,200	25,178,200	25,178,200	25,178,200	75,534,600
		13~20	2	21,869,046	233,512,954	255,382,000	5,000,000	20,538,200	25,538,200	25,538,200	25,538,200	25,538,200	25,538,200	25,538,200	76,614,600
		21~25	5	21,869,046	237,112,954	258,982,000	5,000,000	20,898,200	25,898,200	25,898,200	25,898,200	25,898,200	25,898,200	25,898,200	77,694,600

주택형 (타입)	동호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02.20	2020.06.19	2020.10.20	2021.02.19	2021.06.18	2021.10.20	입주지정기간
84	101 ~ 103	1	2	24,680,316	228,529,684	253,210,000	5,000,000	20,321,000	25,321,000	25,321,000	25,321,000	25,321,000	25,321,000	25,321,000	75,963,000
		2	1	24,680,316	234,529,684	259,210,000	5,000,000	20,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77,763,000
		3	0	24,680,316	240,529,684	265,210,000	5,000,000	21,521,000	26,521,000	26,521,000	26,521,000	26,521,000	26,521,000	26,521,000	79,563,000
		4~12	3	24,680,316	247,929,684	272,610,000	5,000,000	22,261,000	27,261,000	27,261,000	27,261,000	27,261,000	27,261,000	27,261,000	81,783,000
		13~20	14	24,680,316	251,729,684	276,410,000	5,000,000	22,641,000	27,641,000	27,641,000	27,641,000	27,641,000	27,641,000	27,641,000	82,923,000
		21~28	13	24,680,316	255,129,684	279,810,000	5,000,000	22,981,000	27,981,000	27,981,000	27,981,000	27,981,000	27,981,000	27,981,000	83,943,000
	105	1	2	24,680,316	238,529,684	263,210,000	5,000,000	21,321,000	26,321,000	26,321,000	26,321,000	26,321,000	26,321,000	26,321,000	78,963,000
		2	2	24,680,316	244,529,684	269,210,000	5,000,000	21,921,000	26,921,000	26,921,000	26,921,000	26,921,000	26,921,000	26,921,000	80,763,000
		3	1	24,680,316	250,529,684	275,210,000	5,000,000	22,521,000	27,521,000	27,521,000	27,521,000	27,521,000	27,521,000	27,521,000	82,563,000
		4~12	2	24,680,316	254,929,684	279,610,000	5,000,000	22,961,000	27,961,000	27,961,000	27,961,000	27,961,000	27,961,000	27,961,000	83,883,000
		13~20	5	24,680,316	258,929,684	283,610,000	5,000,000	23,361,000	28,361,000	28,361,000	28,361,000	28,361,000	28,361,000	28,361,000	85,083,000
	106 ~ 108	1	2	24,680,316	224,529,684	249,210,000	5,000,000	19,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74,763,000
		2	3	24,680,316	229,529,684	254,210,000	5,000,000	20,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76,263,000
		3	5	24,680,316	234,529,684	259,210,000	5,000,000	20,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25,921,000	77,763,000
		4~12	40	24,680,316	243,729,684	268,410,000	5,000,000	21,841,000	26,841,000	26,841,000	26,841,000	26,841,000	26,841,000	26,841,000	80,523,000
		13~20	18	24,680,316	247,529,684	272,210,000	5,000,000	22,221,000	27,221,000	27,221,000	27,221,000	27,221,000	27,221,000	27,221,000	81,663,000
		21~28	14	24,680,316	251,229,684	275,910,000	5,000,000	22,591,000	27,591,000	27,591,000	27,591,000	27,591,000	27,591,000	27,591,000	82,773,000

주택형 (타입)	동호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회)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02.20	2020.06.19	2020.10.20	2021.02.19	2021.06.18	2021.10.20	입주지정기간
123	102, 106 ~ 108	P/H	4	36,101,789	763,898,211	800,000,000	10,000,000	70,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345,000,000
143A	102~103, 106~108	P/H	5	41,914,258	808,085,742	850,000,000	10,000,000	7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390,000,000
143B	105	P/H	1	41,979,680	808,020,320	850,000,000	10,000,000	7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390,0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7471A	59.5743B	74.9700A	74.9700B	84.6073	123.7617	143.6876A	143.9181B
약식표기 주택형	59A	59B	74A	74B	84	123	143A	143B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시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동별사용승인 포함)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 건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74A	74B	84	123	143A	143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	-	1	-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2	-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4	1	1	5	-	-	-	12
	중소기업 근로자		-	1	1	-	2	-	-	-	4
	장애인		1	3	1	-	3	-	-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	10	3	1	13	-	-	-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15	5	3	19	-	-	-	45
		일반공급(25%)	1	5	1	-	6	-	-	-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3	1	-	4	-	-	-	9
합 계			9	43	13	5	55	0	0	0	12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우선공급(75%) 단수 처리기준 : 소수점 이하 절상. 예시) 13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5%) - 10세대 배정, 일반공급(25%) - 3세대 배정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삼척시 및 강원도 전역</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삼척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5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모집공고일 2019.02.25. 이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수 결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삼척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0.18.) 당일까지 해당지역(삼척시)으로 전입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	신청자격
민영	삼척시	1순위	전용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주택	/ 강원도		85㎡이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추첨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삼척시 및 강원도(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계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호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로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Ⅳ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0.23.(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9.10.24.(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0.25.(금) 08:00~17:30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대체)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서명 확인서로 신청시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유무 확인 불가한 경우
일반 특별공급	O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 추천 공문으로 갈음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혼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노부모가점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위임시는 제출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서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또한,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 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접수장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중이여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 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발급처
일반공급	1순위	삼척시, 강원도	2019.10.24.(목)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9.10.25.(금)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19.11.01.(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11.12.(화)~2019.11.14.(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8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1.01(금) ~ 2019.11.10(일)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11.0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VI 계약 체결 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11.12.(화) ~ 2019.11.14.(목) 3일간, 10:00 ~16:00	일성 트루엘 시그니처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82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 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O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사항표시)
	O		• 계약금 무통장입금영수증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통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1통
		O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상기서류외위임장(견본주택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위임용)1통,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특별공급	O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 하며,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을 한자는 제외)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O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 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2홍길동' / 101동 2001호 계약자 → '010120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BNK경남은행	207-0092-1393-05	코리아신탁(주)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당사에서 알선한 금융권의 계약자별 대출한도에 따라 확정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를 "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납부하여야 합니다.("을"이 이자를 납주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함.)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 사업장은 경남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향후 입주자에 대환 또는 사업주체가 상환예정임.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 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30호에 따라 삼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시공 분양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공무원, 사업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점검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정을 추후 협의하여 결정 예정)

■ 입주예정월 : 2022년 01월 예정(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1)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은 무상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상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결로 및 이로 인한 훼손 등의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고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 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고 이중샤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설치위치	공급금액	납부일정		제조사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1안	거실, 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2안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59B	1안	거실, 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2안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74A	1안	거실, 안방	3,400,000	340,000	3,060,000	
	2안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74B	1안	거실, 안방	3,400,000	340,000	3,060,000	
	2안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84	1안	거실, 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2안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5,900,000	590,000	5,310,000	
123	1안	거실, 안방, 가족실	4,800,000	480,000	4,320,000	
	2안	거실, 안방, 가족실, 침실2, 침실3, 침실4	8,400,000	840,000	7,560,000	
143A	1안	거실, 안방, 주방	4,900,000	490,000	4,410,000	
	2안	거실, 안방,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8,800,000	880,000	7,920,000	
143B	1안	거실, 안방, 주방	4,900,000	490,000	4,410,000	
	2안	거실, 안방,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8,800,000	880,000	7,9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미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기본 설치되는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천장형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2대,3대,4대)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계약서에 명기된 설치위치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은 냉방전용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위치한 실외기실은 천장마감이 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천장형 냉매배관이 발코니 천장에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 선택형 세대의 경우 침실이 통합되더라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위치는 조정되지 않음을 확인바랍니다.

(2)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품	주택형	옵션선택		공급금액	납부일정		제조사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1안	3구	900,000	90,000	810,000	
		2안	3구 + 광파오븐 미설치	600,000	60,000	540,000	
빌트인가전 (냉장고&김치냉장고)	전타입	1안	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팬트리수납장)	6,700,000	670,000	6,030,000	
		2안	빌트인냉장고	5,300,000	530,000	4,770,000	
		3안	빌트인김치냉장고(+팬트리수납장)	1,600,000	160,000	1,440,000	

- 가전제품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른 기본 제공되는 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전체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며, 빌트인 냉장고 품목의 경우 1개의 타입(기본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 기타품목(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1,050,000	105,000	945,000	
59B, 74A, 74B, 84, 123, 143A, 143B	850,000	85,000	765,000	

- 현관중문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 및 개폐방식이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품목은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팬트리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중문 선택이 불가한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구 유상옵션(팬트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59B	750,000	75,000	675,000	가구도어+시스템선반
84	850,000	85,000	765,000	

(5) 유의사항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 세대수에 따라 설치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납품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 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착공) 이후 신규계약 및 품목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체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며, 이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비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지 않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여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형별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한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의 포괄승계가 있을 경우 그와 동시에 본 계약 또한 포괄 승계되어야 하며, 이를 승계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05-8894-31	일성건설(주)

- 납부시기는 계약체결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체 시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미납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각 목문틀(사춤 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 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 문, 미닫이문), 시트지, 창호철물일체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문짝, PL창호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 몰탈일체)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거실)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거실)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 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정재(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욕실폰	시멘트벽돌, 벽및바닥방수,전기설비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주방TV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가구(붙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욕실장,팬트리	-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 제외)등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9A	59B	74A	74B	84	123	143A	143B
금액	21,063,000	20,867,000	25,959,000	25,959,000	28,884,000	43,183,000	50,018,000	49,486,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 제52조,「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Ⅷ 유의사항

■ 설계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 × 0.3025]
- 본 아파트 공사중 전쟁, 내란, 위력행사를 동반한 민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에서 단지내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및 램프는 본 공사시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필요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녹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본 공사 시행중에 시공 등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령 및 수리계산에 의해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조건에 따라 인근학교인 삼척중앙초등학교에 전체 임시 배치되며, 배치 대상교는 삼척교육지원청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마감재
- 마감자재는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급격한 가격의 상승,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홍보물
- 견본주택의 전시품, 홍보 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상 제시된 세대 확장형 및 선택형을 제외한 발코니 각 공간별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 옵션(무상/유상)은 확장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설치된 바닥 마루자재의 색상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실외기실 그릴창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또한, 본 공사시 제조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간의 협의 및 풍압검토 등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관람을 위한 냉·난방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일반 콘센트, 온도 조절기, 바닥 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외벽마감, 조경,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및 대지레벨, 보도선형, 시설물의 위치, 동간거리, 도로 폭, 식재, 주변 옹벽높이, 방음벽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예정이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마감재 등 주택형별로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삼척시건축조례,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의 면적(계단실, 코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로 계산되어 분배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거 공용부분(각 층의 공용 홀, 복도, 세대 전실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하부 PIT높이 및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구간의 계획안이 일부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는 담장 및 경계휀스가 시공되며,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 북동쪽의 외부 배수로가 토목 인·허가로 인하여 배치도와 같이 보강토 옹벽 1~3단 구간 내측으로 설계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외벽, 측벽, 필로티(캐노피 등), 부대복리시설,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D·A 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문주, 옹벽, 주차장램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색채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보육시설,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벽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항공장애등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조명 및 빛의 산란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의 형태 및 입면(옹벽, 지하주차장 외벽, 부대복리시설 입면 포함), 데크 상부 난간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의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부 출입구 및 동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태(외관, 평면) 등이 동별로 크기, 방식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본 공사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확장시 상부세대 확장의 경우 비확장 부위의 결로방지 단열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확장 및 비확장 공간 등은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함)

•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 난방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 통합제어가 설치됩니다.
• 동 필로티 내 제연휀룸 또는 그릴창이 설치되는 경우, 인접한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경우, 주행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 및 방향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통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시설 위치, 자연석 쌓기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달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해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아파트 주/부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은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법 제9조」및「시행령 제5조」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 I 등급 적용됩니다.
• 쓰레기집적장은 총 8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상층 출입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 및 설계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따라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장애자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전조등,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부대시설
•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내 도로, 경비실, 안내표지판, 폐기물보관시설(쓰레기집적장),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오수정화조, 우수저류조
• 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실내-피트니스센터), 주민운동시설(실외),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동, 각종 장식물,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동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경우, 근접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 단지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반상태 및 인근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의해 계획안(주차장 층고, 주차동선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주차대수의 감소는 없음)
• 지하주차장은 공용시설로 특정위치 사용에 따른 전용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진행시 확장형 주차비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동 출입구는 구조검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판넬 또는 철제 데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5m로 제한되며, 2.5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 단위구획은 확, 폭, 크기(너비2.4m,길이5.0m)로 설치됩니다. 또한, 일부 주차는 경형주차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총 801대), 2개의 레벨(17.5, 22.5)로 분할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시 주차출입 및 지상, 지하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7) 세대 공통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사용에 따라 접착면의 탈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세대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에 시공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마감 두께에 따라 설계보다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홍보물의 일부 각 실(현관,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크기에 따라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깔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후 체결바랍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이 불가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다용도실의 창호 위치는 수납가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 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카탈로그 및 기타 인쇄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도기, 위생기구 및 수전 등 부착물의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해 해당 일부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 설치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선기기(스위치,Outlet 등),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 공사시 위치, 사양,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실외기실, 안방 분합문을 제외한 외부창호에는 기본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세대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됩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8) 세대 발코니/실외기실

- 각 주택형별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민원 발생시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환기시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나 보일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에는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냉매배관(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이 노출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및 우천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계약 후 기본형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난간의 높이, 샤시의 설치 유/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향별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장비배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실외기실 도어크기 및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의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 세대 창호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된 모든 창호(난간포함)의 형태, 재질, 색상과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여부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은 미관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세대 무상 및 유상 옵션
• 계약시 무상교체 옵션(가변형 벽체)행사를 통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마감재를 선택 및 시공 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이후에는 별도 무상교체 선택 및 마감재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 세대 옵션(무상/유상)관련 사항은 분양 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행사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되며, 행사기간 이후에는 별도선택 및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 분양보증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내용

구 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기간
아파트	01222019-101-0003300	52,595,107,00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창호 설치시 KS F2292에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해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단위세대 환기장치, 보일러/급수펌프, 환기팬 등)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세대내 적용(차단비율 30%)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세대내 현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내 공용화장실(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실별 온도조절 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단위세대, 부대시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주)건창기술단	(주)건축사사무소 건일종합기술
감리금액	2,401,502,400원	714,103,000원	275,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사업주체/시공사
상호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	일성건설 주식회사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83, 2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80(구월동, 태광프라자 402호)
법인등록번호	3217-03630	110111-0234776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truel-samcheok.com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82번지

※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 1566-848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